

한국 발명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8)



박성웅
〈동양라이트 대표〉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저자의 승락을 받아 연재하는 것임. <편집자 주>

목 차

- I. 서론
- II.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발명
- III. 한국의 발명현황과 특허제도
- IV. 한국발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V. 결론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IV. 한국발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발명 현황의 분석결과

지금까지 한국발명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근대한국의 발명은 중요성은 인식되면서 발명이 국민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해 보지도 못했고 기술도입에만 치중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에서는 특허 제공을 기피하고 있으며 저급기술에도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며 특허권 분쟁은 치열해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것 없이 특허침해로 재소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재소를 당해도 국제법 전문 법조인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어려움이 너무 많고 방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한국이 얻은 특허는 기본특허가 되지 못하고 주변 개량특허가 거의 대부분이며 개량특허도 활용률이 낮아 사장(死藏)되는 발명특허가 너무 많은 실정이다. 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짧아지는데 특허심사기간은 길어 유행이 끝난 다음에야 특허가 나오는 상태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특허출원건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출원건수가 적으니 등록되는 건수도 적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지방의 발명특허 등록은 보잘것 없는 실정이었다.

산업별로는 농수산업에서 발명특허가 너무 저조하니 이 분야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

2. 발명특허 환경의 문제점

가. 심사기간의 장기화

미국등 선진국의 특허심사기간이 2년 이하인데 비하여 한국의 발명특허심사기간은 3년 정도이다.

만약 최첨단기술이라서 심사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거절되었을 경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3년이 더 소요되어 결국 6년만에 특허가 등록되든지 거절되는 것은 특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져 2년인데 비하여 심사가 6년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라이프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특허가 나오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특허청에 신청된 출원(발명의외에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이 1994년 약 19만 건인데, 이 정도의 업무량이면 외국의 경우 최소한 2,500명 이상의 직원이 처리하고 있으나 한국의 4분의 1도 안되는 660명이 처리하고 있으니, 심사기간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

발명의 양적 擴大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사실 1994년은 1993년 보다 특허출원출액건수가 약 3만 건 늘어나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으나 심사관은 관리직을 포함하여 불과 87명 늘어났을 뿐이다.

미국의 심사기간이 1년 6월이고 일본이 2년 4개월인데 비하여 한국은 심사관이 태부족이니 심사기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출원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심사기간은 더 길어 질 수 밖에 없다.

참고로 각국 특허청의 업무량을 비교해보면 <표-15>와 같이 미국은 심사관의 1인당 처리 건수가 91건 인데 한국은 321건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주지 못하면 특허 출원은 줄어 들 것이다. 또 발명특허는 첨단기술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술을 아직도 한번도 접한 적이 없는 신기술인 경우 이 기술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학적 지식을 가진 자라야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준에 있는 과학자들은 심사관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첨단기술과 법률지

<표 - 15> 각국 특허청의 업무량 비교

국 가 별	미 국	일 본	한 국
심 사 건 수	1941	993	154
1인당 처리건수	91	252	321
1인당 담당분야수	33	65	6252

특허청, 1995.

식이 부족한 일부 변리사들은 단순한 특허~상표 등의 출원대행업무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며,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국제특허분쟁을 안심하고 맡길만한 인물이 부족하다.

훌륭한 심사관이나 변리사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특허분쟁을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법관인 판사의 수도 부족하며 공학을 전공하고 법관이 된 판사도 별로 없는 실정인데 최첨단기술 문제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자질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 판사가 절실히 요망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 직무발명활동의 저위와 발명진흥회의 영세화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개인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반면에 기업이나 연구소의 발명활동과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⁵⁸⁾. 일본의 경우 도요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종업원 1인당 40여건으로 총 300만건의 개선발명을 실현하고 "마쯔다" 회사에서도 1인당 80여건으로 240만건의 개선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특허청에 파악되는 전체출원중 96%가 직무발

58) 특허청, 특허청연보, 특허청, 1994. p. 5

명으로 탄생되는데 비하여 한국은 1994년 현재 전체 제조업체 8만8천 개중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불과 0.4%인 323개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직무발명기업이나 발명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발명진흥회는 1994년 기준 163평 건물규모에 45명의 직원이 46억원의 예산으로 기업과 전국 발명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3,000평이나 되는 건물에 2,000명이나 되는 직원이 연간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사업 전개하는데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다. 발명의 국민의식과 교육 부족

발명가를 존중해주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기관(특허청)의 지원만 있지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국민은 발명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식부터 남의 특허는 도용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모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식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 상표 및 특허침해로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발명특허에 대한 교육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지만 특허교육을 전담한 교육요원도 부족하고 특허 대학도 대학원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발명의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발명의 내용도 개량발명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기술수준이 낮은 발명품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폐가망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발명을 좀더 첨단고도화 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부터 다시 공부시켜 우수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특허연수원은 발명교육요원 배출에 보다 더 많은 투자와 시간을 할애 하여야 한다.

라. 선행기술의 사전조사와 성과에 대한 관리미흡

사전검색과정을 소홀히 한 채 연구를 시행하다가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먼저 특허를 등록한 선행자로 부터 권리침해를 이유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표-16〉에서와 같이 선행특허조사 없이 연구에 착수하여 총체적으로 무용지출이 된 사례인데, 사업조사미흡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경우이다. 또 특허관리에서도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특허전담 요원을 본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까지 상주시켜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특허정보 입수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자사에 대한 공격이나 스스로 반격해야 할 내용을 챙기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은 어렵게 발명한 내용을 어느 내용에서 누가 도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알았다해도 분쟁대응능력이 부족하고 특허분쟁 전문가도 확보해 두고 있지 않으며, 외국진출공장도 특허에는 무관심하여 기술만 넘겨주고 귀국하고 있는 것은 중국 또는 동남아로 진출하는 공장은 반드시 그 국가에 선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후 진출해야 하는데 특허출원을 무시 한 채 진출했다가 크게 피해만 보고 철수하는 사례이다.

또 발명이 어느 산업분야에 속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양쪽으로 출원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발명한 것이 쉽게 도용당하고 만다. 만약 의류분야에 발명이 자동차나 전기에 응용되는 경우 발명자는 의류 한쪽만 특허출원하게 되는데, 이때 자동차 제작자나 전기사업자가 다시 출원하게 되면 발명특허를 받게 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특허정보가 미흡한 것이 한국발명의 문제점이다.

<표 - 16> 특허권리 중복투자

회 사 명	연 구 테 마	기존특허 공개일자	연 구 개 발		
			기 간	비용(단위 : 백만원)	참여연구원수 (단위 : 명)
H 전자	반도체 패키지 제조	89. 8. 18	89. 9 ~ 90. 9 (1년)	400	7
S 전관	21" FST 1.7R 0.6P CPT 고휘도 CPT용 형광체	56. 5. 8	85. 1 ~ 88.11	195	3
		69. 9. 10	(2년 11개월)		
		71. 12. 18 77. 9. 21	90. 4 ~ 91. 2 (11개월)	148	7
S 전기	FLY BACK TRANSFORMER	89. 11. 6	90. 1 ~ 91. 1	510	3
L 사	Storage Capacitor (a-si TFT)	87. 4. 20	90. 1 ~ 91. 12 (1년)	500	8
Q 사	EMI대책 영상표시기 의 개발	87. 11. 20	88. 9 ~ 90. 9 (2년)	500	4
H 금속	60-70 밀리미터 겸용 걸쇠못치	86. 1. 14	87. 2 ~ 87. 12 (10개월)	35	6
O 전기	새도우마스크 제조 방법	84. 7. 3	92. 7. 1 ~ 93. 9 (1년 2개월)	228	4
K 전자	문자 광학판독장치	91. 11. 6	91. 11 ~ 92. 3 (5개월)	2	8
S 전자 공업	고휘도 3색 LED를 이용한 교통신호등	84. 9. 17	90. 4 ~ 90. 6	1	2
		89. 12. 11	(3개월)		
K용접봉	용접용 와이어의 영킴 방지장치	86. 5. 29	89. 10. 5 ~ 89. 10. 25 (20일)	1	1

자료 : 특허청, 세계화시대의 특허전략 1995. 3

마. 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미흡과
발명의 높은 사장(死藏)율

특허분쟁을 막아 보기 위하여 산업분쟁조정위
원회가 1995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95
년 4월까지 불과 3건의 조정안이 접수되었을 뿐

이다. 분쟁건수 4,800건에 비하여 너무 저조한
활동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분쟁을 줄여야 하며 또 아마추어 발명가들이
어렵게 발명한 것은 사업화 되지 못하고 사장(死
藏)되고 마는 경우가 많은 이유 중에는 첫째 특
허 받기가 어렵고, 둘째, 시장의 확보가 어렵고

셋째, 홍보하기 어렵고 홍보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발명가를 연결해주는 발명특허사업화알선센터가 있어야 한다.

바. 특허출원비 과중과 국제특허분쟁 전문가 부족

특허를 등록 받고자 한다면 특허출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변리사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기본 수수료가 특허는 70만 원 정도이며 그후 등록되면 사례금을 포함한 등록료도 70만 원 정도로써 비전문적인 일반 개인의 경우 특허 및 상품화의 성공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뜻 이 많은 돈을 부담하기란 쉽지 않고 결국 체념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출원비의 과중은 출원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되며, 결국 이러한 장애들로 인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고 있고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건수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국제특허를 받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에 출원할 경우에는 각국마다 약 5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도 과중한 부담이다. 만약 동일한 특허를 10개국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셈인데, 개인이 이런 비용을 각출(齎出)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또 1995년 기준 기술 패권시대의 첨병으로 통하는 변리사의 절반이 넘는 210명이 인문계열출신이고, 출원과 분쟁이 급증하는 전기전자 분야는 33명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국제특허분쟁에 대응할만한 노하우를 갖추지 못해 우물안 개구리로만 남아있다. <계속> **발특 9607**

